사	외	비
기	업	비	밀

이사회 규정

1973.01.01. 시행
1990.09.01. 개정
2004.04.29. 개정
2006.04.14. 개정
2012.09.13. 개정
2024.07.26. 전부개정
2025.03.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진약품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07.26>

제3조(기능)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매입 · 양도 · 처분, 대규모 자금의 차입, 이사의 선임 · 해임,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 등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07.26>

제4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외	비
기	업	비	밀

③ 이사는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07.26>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 또는 상임이사의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회의 경우에는 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재적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소집) ① 이사회는 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소집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3.28.>

제7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장이 되며, 부재중이거나 유고로 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법령·정관 및 사장의 경영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

개정 2024.07.26>

제8조(의사 및 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단, 사장 및 상임이사 해임건의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해당이사를 제외한 재적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시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해당 안건의 담당 임원이 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부서장 또는 부서장급 관계직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07.26>

④ <삭제 2006.4.14>

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7.26>

1.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안건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사	외	비
기	업	비	밀

(5)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6) 주주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채택 <신설 2024.07.26>

(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신설 2024.07.26>

2. 재무 및 투자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준비금의 자본전입 승인

(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에 관한 사항

(6) 자본금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7) 자본금 5%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 신설

(8) 자본금 5% 이상 유·무형자산의 취득, 처분

(9) 자본금 5% 이상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 채무면제 <개정 2024.07.26>

(10) 자금의 신규 차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26>

3. 중요 경영에 관한 사항

(1)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의 승인

(2) 기업이념, 비전, 철학 등 기업정체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26>

(3) 중요한 CI 제정 및 변경

(4) 이사윤리행동 강령 및 기업윤리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2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26>

(6) 위원회 위원 선임

(7) 사외이사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

(8) 지점의 설치·이전 및 폐지 <개정 2024.07.26>

(9) 이사회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26>

(10)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26>

(11) <삭제 2024.07.26>

(12) 경영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변경

(13) 제1항 제2호 제3목에 의해 승인된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변경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상임이사 경업 승인

(2) 상법에 규정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3)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26>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가 참여할 수 없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의 제2호의 동의에는 사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1. 사장의 경영계약서 결정 및 변경
2. 사장의 경영계약 이행 여부의 평가 및 사장의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26>
3. 기타 법령·정관 및 사장의 경영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사항

③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 범위 내의 사항을 사장에게 위임하여 결정·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결산 결과

2. <삭제 2006.4.14>

3. 위임사항 중 중요사항

4. 최근 경영상황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요구한 사항

⑤ 제1항 각 호의 의결사항 중 예산 승인 시에 포함된 사항이나 중장기 경영계획 등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 1(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사항과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은 제6조 제2항이 규정하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고사항) <삭제 2006. 4.14>

제11조(의사록) 간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 그 안건, 경과요령과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의서 작성·통보) ①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이 결의되었을 경우에는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요구권) ①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최적의 의사결정 수행

을 위하여 상임이사 및 경영임원의 직무와 관련한 필요자료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26>

② 사외이사는 사장의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조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26>

제14조(경비지급) ①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과 금액은 사장이 따로 정하여 집행한다.

제14조의 1(자문) ①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 내용,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정관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	외	비
기	업	비 밀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제6차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사 외 비
기 업 비 밀

(별지 제1호서식)

(전 면 표 지)

회 의 명	제 차 이사회
의안 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공시 여부	

의결사항

(내 용)

1. 의 결 주 문
2. 제 안 이 유(개정이유)
3. 주 요 골 자
4. 참 고 사 항
   가. 관 련 법 규
   나. 예 산 조 치
   다. 합 의
   라. 기 타
5. 안 건(별첨)
6.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안 건 명)

제 안 자	
제출년월일	20 . . .

210㎜×298㎜(인쇄용지 70 g/㎡)

사 외 비
기 업 비 밀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표 지)

회 의 명	제 차 이 사 회	보고사항
보고번호	제 호	
보고년월일		
공시여부		

(안 건 명)

제 안 자	
제 출 년 월 일	20 . . .

210㎜×298㎜(인쇄용지 70g/㎡)

사 외 비
기 업 비 밀

(별지 제3호서식)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제 차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부의안건 :

첨부: 제 차 이사회 부의안 부. 끝.

20 년 월 일

영진약품㈜ 이사회 의장 (인)

210㎜×298㎜(인쇄용지 70g/㎡)

사 외 비
기 업 비 밀

(별지 제 4 호서식)

제 차 이 사 회 결 의 서

의결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장

의결일자	20 . . .(: ~ :)	장 소	
작 성 자			

의안 번호	제 안 자	제 목	의결결과

결 의 사 항

210㎜×298㎜ (인쇄용지 70g/㎡)

사 외 비
기 업 비 밀

(별지 제5호서식)

이 사 회 의 결 통 보 서

수 신 :

제 차 이사회(. . .) 심의 안건이 다음과 같이(결의, 수정결의, 부결, 보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의 안 번 호	안 건 명	의 결 결 과
----------	----------	----------

영진약품㈜ 이사회 의장 (인)

210㎜×298㎜ (인쇄용지 70g/㎡)